

충청북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1997년 11월 10일

나. 회부일자 : 1997년 11월 11일

3. 제안이유

현행 충청북도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1997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 국가유공자·장애인·교통·주택건설 및 교육등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하고, 고속철도건설사업·주택조합 등 지방세법에 감면내용이 규정된 분야의 삭제와 조세정책목적이 달성된 점인계약서 사용시 감면은 적용시한을 연장하지 아니하고
- 중소기업지원센터, 지방공사등 국가정책 목적달성에 필요한 분야는 세제 지원을 신설하며
- 기타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한 조문과 용어를 정리하는 등 감면조례를 전면적으로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임

4. 주요골자

1. 세제지원을 위한 감면규정 폐지

(가) 고속철도건설사업에 대한 감면

-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고속철도건설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소유하는 고속철도건설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던 것을 지방세법 제289조 제3항에 신설 규정됨에 따라 삭제함

(나) 조합주택에 대한 감면

- 주택조합이 건축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동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주택조합명으로 취득·등기하는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동 조합주택을 조합원이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일정면적 규모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의 전액면제 또는 50% 경감하던 것을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에 신설 규정됨에 따라 삭제함

(다) 점인계약서사용 등에 대한 감면

- 개인간의 거래시 작성된 점인계약서에 의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전업농육성대상자가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10% 경감하던 것을
 - 점인계약사용시 경감규정은 당초 감면목적이 달성되었고
 - 전업농육성대상자가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취득시 경감하는 경우는 지방세법 제261조에 50% 경감규정이 있어 감면의 실효성 상실로 삭제함

2. 세제지원을 위한 감면규정 신설

(가)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 지방공사(공단포함)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법인등기시포함)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법인(단체포함)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면제하지 아니함(안 제23조)

(나) 관광단지투자촉진을 위한 감면

-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단지안에서 관광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안 제24조)

(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고, 동 지원센타가 그 고유업무 수행을 위하여 받는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하며, 법인등기시에는 등록세를 면제함(안 제25조)

(라)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조합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고, 법인등기시에는 등록세를 면제함(안 제26조)

(마) 한국산업안전공단에 대한 감면

-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등 한국 산업안전공단법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안 제27조)

(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감면

-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연금기금증식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안 제28조)

3. 미비한 조문 개선·보완

(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규정 보완

- 상이등급 1급 내지 5급인 국가유공자가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1대를 구입하여 본인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감면혜택을 주던 것을
⇒ 상이등급 6급까지 확대하고, 또한 본인명의 뿐만아니라 배우자 또는 세대별주민등록표상 직계존·비속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면제토록 하며(안 제2조 제3항)
- 국가유공자가 승용자동차를 취득하여 감면을 받은 후에 기존 승용자동차를 대·폐차하는 경우 새로운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1가구 2차량에 해당되어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모순점을 해소하기 위해
⇒ 새로운 승용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에 소유하던 승용자동차를 이전등록 등을 하는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1대를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1가구 2차량에서 제외하여 면제혜택을 부여함(안 제2조 제4항)

(나)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규정 보완

- 국가유공단체가 수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에 있어,
국가유공자단체의 범위를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에 해당하는 비영리사업자로 규정하였던 것을
⇒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로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3조)

(다) 장애인소유 승용차에 대한 감면규정 보완

-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장애인(시각의 경우는 1급 내지 4급)이 본인 명의(부모 또는 배우자명의 등록 포함)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던 것을
⇒ 본인(부모 또는 배우자 포함)명의 외에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면제토록 하며(안 제4조 제1항)
- 장애인이 승용자동차를 취득하여 감면을 받은 후에 기존 승용자동차를 대·폐차하는 경우 새로운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1가구 2차차량에 해당되어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모순점을 해소하기 위해
⇒ 새로운 승용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에 소유하던 승용자동차를 이전등록 등을 하는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1대를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1가구 2차량에서 제외하여 면제혜택을 부여함(안 제4조 제2항)

(라)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규정 보완

-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등이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5세대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던 것을

⇒ 일반인에게 분양·또는 임대하는 복리시설에 대하여는 면제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토록 함(안 제14조 제1항)

(마)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 보완

-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등이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5세대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던 것을

⇒ 일반인에게 분양하거나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지 아니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에 대하여는 면제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토록 함(안 제15조 제2항)

(바)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규정 보완

-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에서 시장 재개발·재건축 당시의 기존시장에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계획인가일 현재 기존시장에서 5년전부터 계속하여 입점한 상인이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여 주던 것을

⇒ 시장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당해 시장안에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시장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로부터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함(안 제18조 제3항)

(사)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규정 보완

(종전 : 농외소득원 개발을 위한 감면)

- 농공단지 입주자,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및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 등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던 것을
⇒ 농공단지 입주자에 대한 면제규정이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 규정됨에 따라 감면조례에서 삭제하고, 이에 따른 조제목을 정리 함(안 제19조 제1항)

(아)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규정 보완

-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등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서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자와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건축물 면적(연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던 것을
⇒ 부속토지의 범위를 건축물 바닥면적 7배이내로 하여 면제토록 함 (안 제20조 1항)

4. 기타 용어 정리등

관련 개별법령 및 지방세법에서 용어를 개정함에 따라 감면조례상의 용어 등 정리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안 제2조제2항)

- 교통부 ⇒ 건설교통부(안 제9조제3호)
- 건설기계 ⇒ 기계장비(안 제10조)
- 사용검사일 ⇒ 사용승인서교부일(안 제12조제2항)
- 주택개량재개발사업 ⇒ 주택재개발사업(안 제16조)

5. 검토의견

충청북도세 감면조례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도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감면시한을 3년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으로는

- 사회복지지원과 사회교육시설, 대중교통, 서민주택건설, 농어촌지원 및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 규정은 적용기간이 1997년말까지로 되어 있어 감면시한을 2000년말까지 3년간 연장하였고
- 지방세법에 명시되어 있는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감면, 조합주택에 대한 감면, 전업농 육성대상자가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취득하는 농지의 경감규정과 당초 감면목적이 달성된 점인계약서 사용등에 대한 감면 규정은 삭제하였으며
- 또한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에 있어서는 지방공사, 관광단지투자 촉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신용보증조합, 한국산업안전공단, 국민

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감면 규정은 정책 목적달성을 위하여 세제지원을 신설하였고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국가유공자단체, 장애인소유 승용자동차, 공동주택, 임대주택, 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으며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현실에 맞지않은 불합리한 용어는 자구를 정리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부 록

- 충청북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